

영국사례

이미 신청인이 다른 공적 사안에 관련돼 이름이 알려졌고 법정 문서에 신청인과 연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익명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영국 PCC는 『Scottish Sun』지의 2007년 5월 15일자 “떨어져 있어”라는 제하의 기사가 윤리강령 제9조를 위반했다며 Glog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자신을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친척으로 취급했다며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사위인 Gray가 부인(불만신청인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Gray의 보석 조건은 Gray가 불만신청인의 집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 측 변호사는 불만신청인이 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해외에 있었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의 이름은 법정 변

론 중에 거명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그 이야기에 관련되지’ 않았고, 따라서 불만신청인의 신원이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신문사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 측의 변호사는 불만신청인이 『Scottish Sun』지를 상대로 지난 2003년 PCC에 접수한 항의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보도에서 윤리강령 제9조를 위반하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cottish Sun』지는 PCC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Scottish Sun』지는 고소된 Gray의 보석 조건을 기술한 법정 문서에 불만신청인의 이름이 쓰였기 때문에 불만신청인이 그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

한 『Scottish Sun』지는 불만신청인이 Kinfauns 성(城) 주변의 일정 지역 내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토지개혁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진영에 선 이후로 Kinfauns 성이 불만신청인의 소유라는 것은 공공연한 상식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cottish Sun』지는 기소된 사위 Gray와 불만신청인의 관계 또한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며 Gray가 최근에 햄버거 트럭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개별적인 문제에 관한 빼어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고 그 기사에는 불만신청인과 Gray의 이름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불만신청인 측 변호사는 이러한 『Scottish Sun』지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독자들은 불만신청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며 불만신청인과 Kinfauns 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 측 변호사는 ‘산책할 권리’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제한적이었으며 Gray가 불만신청인의 딸을 폭행한 사건 역시 불만신청인의 소유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신청

인 측은 “보석조건은 불만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며 불만신청인의 이름이 법정에서 거론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햄버거 트럭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불만신청인과 사위인 Gray의 관계가 언급됐다고 해서 불만신청인에 대한 윤리강령의 보호(범죄자 친구 또는 친척의 익명성의 보장)가 불필요해 지는 것은 아니며 그 보호가 단지 불만신청인의 집이 법정 문서에 거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영향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PCC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불만신청인이 이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련되었는가’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PCC는 불만신청인이 이 이야기에 관련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불만신청인의 집이 Gray가 접근하지 말아야 할 장소로써 법정문서에 명확하게 언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PCC는 “이 사실은 불만신청인이 법정 명

령의 수신자와 연관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 내에 불만신청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했다. PCC는 “기소자 때문에 언론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미 불만신청인과 사위의 관계가 널리 알려진 상태였고 불만신청인 자신의 익명성도 산책접근권 반대사건을 계기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불만신청인의 익명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인과 기사의 내용 간의 관련성은 사위인 Gray가 법정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토지가 불만신청인의 소유지였다는 점에 의해 성립된다고 밝혔다. PCC는 『Scottish Sun』지가 Kinfauns 성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법정 문서의 세부사항을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성의 소유주가 불만신청인임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정황이 확실하므로 불만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의 의정 활동을 비난하는 ‘악랄한 소문 캠페인’의 희생자가 됐다”고 보도됐으며 일주일 뒤 게재된 둘째 기사에서는 “총 주지사가 한 동료를 남부 호주의 주지사로 임명시키고자 로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남부 호주 주지사 사무실은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불만신청인은 “특히 ‘새로운 논란 속의 총 주지사’라는 헤드라인으로 실린 11월 26일자 기사는 총 주지사와 남부 주지사가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포함했고 주지사들이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는 사실이 헤드라인이나 전반부 단락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The Sunday Telegraph』지는 두 기사가 적절한 출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Sunday Telegraph』지가 공공의 관심 대상인 많은 문제들을 다뤘고 각 정보들의 출처가 정확했으며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총 주지사가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헤드라인과 두 번째 기사를 균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총 주지사와 남부 주지사가 부인한 사실이 보도되지 않는 등 총 주지사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호주 언론평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호주사례

보도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기사에 대한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총 주지사 Jeffery의 공식 비서 Hazell이 『The Sunday Telegraph』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 일부를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The Sunday Telegraph』지가 보도한

2006년 11월 19일자 기사와 2006년 11월 26일자 기사가 불분명한 출처를 많이 인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 중 2006년 11월 19일에 실린 기사에서는 “총 주지사가 그